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23- |
|----------|-------|

|       |  |
|-------|--|
| 발의일자  | 2023. . .  |
| 발 의 자 |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br>표주숙, 신재화, 신중양,<br>김향란, 최준규, 이재운,<br>신미정, 김혜숙 |

1. 제안 이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관리 및 지원 등 진행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결과의 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실비보상을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05. 16. ~ 05.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토론회 등”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신 청 인 | 성 명: | 직 위: |
|       | 소 속: | 연락처: |

|                               |  |      |  |
|-------------------------------|--|------|--|
| 행 사 명                         |  |      |  |
| 목 적                           |  |      |  |
| 일시/장소                         |  | 참석인원 |  |
|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  |      |  |
|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      |  |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의회의회장 귀하

## 토론회 등 회의록

|                          |  |
|--------------------------|--|
| 일시 및 장소                  |  |
| 발제자 및<br>토론자 등<br>참석자 명단 |  |
| 토론 및<br>진행사항             |  |
| 발언자의<br>발언 요지            |  |
| 그 밖에<br>중요한 사항           |  |
| 비 고                      |  |